

순천대학교 학교기업 운영규정

제정 2012. 12. 7. 개정 2019. 7. 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41조, 「순천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라 순천대학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학칙 제14조의3제1항 별표3의 학교기업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순천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부(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이 대학교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 설치 및 운영

제3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 ①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소재지
2. 사업종목, 관련 학부(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출된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인터넷, 대학신문 등을 이용하여 학생·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학교기업의 설치에 산학협력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 한다.

④ 총장이 학교기업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총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학교기업은 기업의 특성에 맞는 개별사업을 수행한다.

제3장 조직과 운영

제5조(조직) ① 총장은 학교기업의 대표가 되고, 학교기업별로 운영책임자인 학교기업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 하부조직을 따로 둘 수 있다.

② 학교기업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학교기업의 지원업무는 산학협력단에서 총괄한다.

제6조(현장실습) ① 학교기업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학교기업의 시설·설비, 교육 훈련 또는 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 실습 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성과 제출) ① 학교기업은 매출액, 순손익 등의 운영성과가 기재된 반기별 보고서를 다음 반

기가 시작되는 달의 5일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학교기업의 운영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학교기업의 기본운영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기업별로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학교기업장이 된다.

② 위원은 해당 학교기업장, 산학협력부단장, 교무부처장, 연구진흥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교기업 관련 학과 소속 교수를 포함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개정 2019. 7. 17.)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학교기업의 사업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해당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사업내용에 관한 중요사항
3. 해당 학교기업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기업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해당 학교기업 운영관련 세칙·지침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해당 학교기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해당 학교기업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3조(운영재원) 학교기업의 수입금은 사업수입금, 국가·지방자치단체·기성회의 보조금, 산업체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회계처리) 학교기업의 회계는 산학협력단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두어 처리하며, 학교기업회계처리 규칙(교육부고시)에 따르고 동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교육부고시)을 준 용한다.

제15조(예산 및 결산) 학교기업장은 학교기업의 예산안과 결산 보고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 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감사) 산학협력단장은 학교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감사 결과는 산학협력단 결산보고시 함께 보고한다.

제6장 그 밖의 사항

제17조(성과보상) ① 학교기업 운영으로 순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이익 발생에 기여한 해당 학교기업의 직원, 이 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에게는 장학금으로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과급은 해당 학교기업장의 요청과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급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의 학교기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세칙은 학교기업별로 정한다.

부 칙(2012. 12. 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학교기업과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7. 17.> (순천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순천대학교 학교기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산학연구지원과장”을“연구진흥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